

예 산 총 칙

2024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 ·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 · 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91,443,120	23,743,294
일반회계	701,211,538	21,036,346
특별회계	90,231,582	2,706,947
공기업특별회계	12,089,066	362,672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12,089,066	362,672
기타특별회계	78,142,516	2,344,275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950,155	28,505
주차장특별회계	604,243	18,127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649,649	79,48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5,415,989	762,48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138,982	34,169
치수사업특별회계	377,068	11,31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009,678	30,290
원자력발전지역지원시설세특별회계	44,878,196	1,346,346
도시개발특별회계	1,001,543	30,046
비행장소음대책지원 특별회계	117,013	3,510

제 2 조 세입 ·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120,549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8,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을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회계연도 종에 교부되는 국도비, 특별교부세 등을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